

# 장애학생 교육 및 대학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

개정 2011. 3. 2.  
 개정 2012. 3. 1.  
 개정 2014. 6. 1.  
 개정 2016. 3. 1.  
 개정 2018. 3. 1.

## 제 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「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」 제 29조와 제 30조, 「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 14조에 따라 장애학생의 교육 및 대학생활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장애학생의 범위)** 장애학생은 특수교육대상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과 관계기관에 장애인으로 등록(장애인등록증 소지자)된 장애학생 모두를 말한다.

## 제 2장 학생관리 및 학습지원

**제3조(장애학생 신고)** 장애학생(특수교육대상자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제외)은 입학 직후 또는 장애인등록증 발급 직후 장애학생지원부서에 장애등급과 장애유형을 신고하여야 하며 재학 중 장애정도가 완화 또는 심화되어 유형, 등급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학기 개강 전까지 변경·신고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신상자료 관리)** ① 장애학생지원부서는 장애학생에 관한 신상자료 관리를 총괄한다.

② 장애학생지원부서는 관련 부서 간 협력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매학기 장애학생 명부를 작성하여 관련부서에 공유하도록 한다.

**제5조(기자재 확보 및 활용지원)** 장애학생지원부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장애학생 학습활동에 필요한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를 확보·운영하고 정기적으로 활용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.

**제6조(장애학생 정보제공)** ① 교수·학습 지원을 위해서 장애학생이 수강하는 강좌의 교강사에게 장애학생의 장애유형, 장애 정도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 (장애학생 교수·학습 권고 안내문 발송)

② 장애학생에 관한 정보를 교강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사전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해당 교강사에게는 정보보호 의무를 숙지시켜야 한다.

**제7조(수강신청)** 장애학생이 소속된 스쿨은 중증장애, 거동불편, 지적수준 평균이하 등을 이유로 장애

학생이 대리수강신청을 희망할 경우 개별상담과 관련 스쿨의 협조를 통해서 서면으로 우선 수강신청 내용 작성한 후 대리수강신청이 이루어지도록 한다. 또한 장애학생이 수강 희망하는 과목이 정원초과 되었을 경우에는 우선 수강신청 원칙에 따라 수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.

**제8조(학점등록제)** ① 학칙 49조의 2에 따라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.

② 학점등록제를 신청하여 선정된 학생은 학칙시행세칙 제6조(등록) 4항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한다.

**제9조(장학금 지급)** 장애학생에게는 장애 및 가계곤란 정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금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**제10조(장애학생도우미)** 장애학생에게는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도우미를 제공할 수 있다.

① 장애학생 도우미 모집, 선발, 교육, 배치

② 도우미 학생 상담 및 활동 안내 및 자료 제공

③ 도우미 학생 평가 및 활동비 지급 (세부사항 장학금 관련 규정에 따름)

### 제3장 대학생활 지원

**제11조(장애이해 프로그램)** 장애학생지원부서는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 예방과 비장애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특강, 장애체험 등 장애이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.

**제12조(동아리 활동 및 단체활동지원)** 장애학생지원부서는 장애학생의 동아리 활동 및 단체활동을 지원하며 이에 필요한 차량, 시설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.

**제13조(편의시설 확충)** 관리센터는 연차별 장애학생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필요시 확충 계획을 수립한다.

**제14조(기숙사 이용)** 장애학생이 기숙사 이용을 희망할 경우 우선 배정한다.

**제15조(상담 등)** 장애학생의 원활한 대학생활과 진로 및 취업을 위해서 다음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① 장애학생의 원활한 대학생활을 위한 상담 (학생진로상담센터와 연계)

대학생활 가운데 겪는 어려움 등에 대해서 전문 상담 직원과의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차별없이 즐겁고 원활한 대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.

② 장애학생 진로·취업상담 및 추후지도

정기적 진로상담을 통해서 장애학생의 진로에 대한 고민 해결 등에 도움을 주도록 하며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학생을 위해서 취업상담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교내외 취업프로그램 및 장애인 고용 박람회 등의 행사에 장애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취업알선을 최대한 돕는다.

**제16조(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)** 장애학생의 교육 및 대학생활에 관한 지원의 기본 방침과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를 두되, 그 기능과 운영은 복지위원회가 대신한다. (단,

장애학생 9인 이하의 경우 특별지원위원회 설치하지 않아도 됨.)

**제17조(장애학생지원부서)**

- ① 장애학생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생담당 부서를 장애학생지원부서로 하며 담당 직원을 둔다.
- ② 장애학생지원 담당직원은 다음의 일을 수행한다.
  - 1. 장애학생 상담
  - 2. 도우미 지원제도의 운영
  - 3. 장애학생 이동지원 차량의 운행
  - 4. 장애학생 편의시설의 제공 및 개선
  - 5. 기타 장애학생 지원 개선 업무

**부 칙**

-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-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